

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(통인동)
 정강자 귀하
 03036

서울고등검찰청
 (02)530-3114)

2019. 10. 24.

수 신 정강자 귀하 발 신 서울고등검찰청
 (대리인 공익인권변론센터,법무법인 다
 산,법무법인이공,해우 법률사무소)
 제 목 **항고사건처분통지** 검 사 방 봉 혁



원세훈 외 28명에 대한 불기소 항고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 하였으
 므로 알려드립니다.

처 분 결 과	사 건 번 호	2019 고불항 제 9111 호
	년 월 일	2019. 10. 24.
	결 과	결정주문 : 항고기각 이 항고 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처분 이유의 요지는 불기소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결정서 기 이 유 : 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하는 바, 일건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비 고

※ 항고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첨부하는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